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AT와의 효과적인 관계(relationship)를 갖기 위한 어떠한 원칙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원칙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i) 운동전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한 protective equipment 와 good coaching, 경기 시설상태 등을 점검하는 Health supervision.

(ii) 운동전 의사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iii) 의사중 sports program과 관계 있는 의료인이 있을 것.

(iv) 모든 선수의 의료보험 가입.

(v) 시합, 연습시 즉시 후송이 가능할 것.

(vi) 응급 처치원(first aid)이 상주할 것.

(vii) 손상치료나 진찰의뢰시 의사와 가족간의 협조와 communication.

(viii) 선수는 손상 후 의사의 허락 없이는 운동할 수 없음(이때 AT가 처방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progress를 의사에게 제공).

(ix) 의무기록의 보관 및 분석-손상 당시의 특수상황, immediate care 내용, 진단과 소인(disposition), 환자의 의학적 문제(medical recommendation).

(x) 운동선수 특유의 이상제질, contact lens, allergy, 기타 사항을 lost team에게 알려주기 위한 medical record 지참.

(4) Athletic trainer의 기능

AT는 운동선수의 육체적 상태, 영양상태, 음주·흡연·위생에 대한 개인의 건강인식도, 선수의 면역상태, 정신위생, 환경에 대한 적응력, 약물남용등 개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AT가 할 수 있는 기능 및 처치는 다음과 같다.

A. Physical therapy

1. Wound healing (bruise, sprain, muscle injury)
2. 치료목적으로 physical agent 사용(Ice pack, heat pack, whirl pool, bath massage, crutch walking)

B. Protective athletic equipment

- ① Head protection; eye protection, helmet, face mask, mouth protector.
- ② Body protection

C. Protective taping

- ① Function of adhesive taping.
- ② Principles of tape application.
  - Preparation of area
  - Selection of technique
  - Application of tape
  - Removal of tape

D. Physical conditioning

- Warming up(Metabolic readiness, Neuro muscular readiness, physical readiness)
- Isometric ex.
- Calisthenics(isotonic ex. & equipment)
- Partner resistance ex.
- Weight training
- Interval training to increase endurance
- Rehab. ex.(Physical conditioning ex. for injured athlete)

E. 응급처치(First aid)

F. Evaluation & Records

# 그간의 사고 경위와 한마디....

대의원 의장  
백 진

親愛하는 會員 여러분!

其間 安寧하십니까?

제게 一生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달리 表現한다던 돈 주고도 經驗하기 힘든 國立호텔 生活를 했던 일도 벌써 半年前의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會員들께서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正確히 모른 채 莫然히 무슨 일인가 있었다더라 하는 程度로만 알고 계시기에 事故(?) 경위를 말씀드리고 저의 所信 또한 傳하고자 합니다.

事件은 85年 11月 7日 느닷없이 保健所職員 4名의 訪門을 받았고, 書類 一切를 압수 당하고 全職員이 다 함께 同行해야 한다는 그들의 말을 無視한 채 혼자 保健所로 向했습니다.

內容을 들어보니 仁川市 保健課로 仁川市醫師會社 會淨化委員이란 사람이 電話로 “物理治療士가 單獨開業을 할 수 없는데 白進 物理治療室이라고 하고 있

니 어떤 일이나?” 빨리 조치를 해 달라는 申告를 받고 不可避하게 告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分明히 82年 11月엔 모 整形外科와 손을 잡고 開業을 했음니다만 患者가 늘고 他病院 患者가 저희 白進 物理治療室로 治療를 받으러 오면 그곳에선 人力이 딸려 절절때는 治療를 받다가 이곳에선 1日 7,8名 이상은 治療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일손이 남다보니 最善을 다 한 治療에 所聞도 나게 되었고 原來 治療를 받던 病院에 가서 患者까지 또 모셔오는 現象이 잦아지고 보니 自然히 시기의 對相이 되었고, 四寸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俗談처럼 손을 잡은 整形外科에도 患者가 뿔로 늘다보니 異狀한 所聞에 휘말리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 整形外科와 昨年 5月 末日을 期해 손을 끊어야 하는 段階에 이르렀습니다. 事實인즉 타 병·의원에서 보낸 患者를 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다시 그 정형외과에 모시고 가면 진단이 틀리게 나오는

참조 형소 54

인천시방검찰청 (424-1121)		검 사 장
1985 형 32231 호	발 신 인천시방검찰청	1985. 11. 21.
수 신 인천지방법원	검 사	차장검사
제 목 공 소 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본 적 서울 성북구 안암동 5 가 112-160 번지 주 거 인천시 중구 항동 7 가 27 번지 라이프아파트 2 동 1213 호 직 업 물리치료사 주민등록번호 *****-***** 성 명 백 진 ( ) 생 년 월 일 1943.6.5. 생 (42 년)	부장검사
죄 명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적 용 법 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 조 의료법 제 25 조	
신 병	1985.11.9. 구축 불구속	
변호인	변호사: 김 중 세	
첨부 1	구속영장	1 통
2	피의자수용증명	1 통
3	변호인선임계	1 통
4	구속기간연장결정	통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1975.7.31.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1985.5.30. 부터 같은 해 11. 7 까지의 사이에 인천 남구 도화동 369 의 1 소재 “백진물리치료실” 을 경영하던자인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1985.6.22. 시간불상경위 물리치료실에 의사의 처방없이 무릎관절 유착으로 찾아온 공소의 이재원에게 전기자극치료등을 하여 주고, 치료비 3,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11.11. 까지의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전후 10 회에 걸쳐 환자 10 명을 치료하여 주고 치료비를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다.

별 지 목 록

순번	법 행 일 시	환자의 성명	병 명	치 료 내 역	치 료 비
1	1985. 6.22. 시간불상경	이 재 원	무릎관절유착	전기자극치료등	3,000
2	1985. 7.25. "	강 신 수	요 통	초음파치료등	"
3	1985. 8. 2. "	방 농 현	허리디스크	"	"
4	1985. 8. 3. "	김 현 선	요추디스크	"	"
5	1985. 8. 7. "	김 성 숙	"	"	"
6	1985. 8.17. "	윤 성 욱	"	"	"
7	1985.10.94. "	정 욱	"	"	"
8	1985.10. 9. "	김 경 화	"	"	"
9	1985.10.10. "	나 운 자	"	"	"
10	1985.10.11. "	장 양 섭	견관절유착	전기자극치료	"

※ 상기한 10 명의 환자가 모두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는 사실이 판·검사에 의해 확인되었음은 물론이나, 개별적인 치료의뢰서를 별도로 받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수가 허다하여 환자를 보내주셨던 병·의원 원장님·과장님들께 곤욕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되니 아예 의료보험 청구를 포기하고 치료한 환자들을 저희가 진찰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가 의구심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간혹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환자가 있으면 꼭 가까운 의원으로 모시고 가서 진찰을 받게 한 후 치료를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타 병·의원에서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일이 있는 장기 환자와 하루 이틀 치료를 받고는 나타나지 않으신 바람에 정확한 진단명을 받아내지 못하고 끝난 환자들이 불씨가 된 것입니다.

공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뒤늦게 보건소에서 자술서를 쓰면서 알게 된 일입니다만 모 지방에서 신입회원들이 취업은 안되고 하니까 의원급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개업인사를 하다보니 보건소 직원과 임직원들 한 일이 있었는데 “왜 인천에 계신 백진 前 회장님은 단독개업을해도 되고 저희는 안된다는 말입니까? 하고 따지다 보니 인천시로 조회가 두 번씩 왔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던 차에 신고가 들어오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 보건소 담당자의 말씀이었습니다.

피해자 없는 피고가 되어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김용천 협회장님과 이사분들의 따뜻한 성원아래 진정서와 함께 성금이 보내졌고, 제가 몸 담고 있는 국제와이즈맨 인천 문학클럽과 재인 배재동창회에서 많은 성금을 보내 주시고 진정서 또한 내 주셨는가 하면 환자분들이 앞장서서 진정서를 내어 주심은 물론 물리치료실 연료비까지 대어 주시며 운영을 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12월 2일 호텔생활을 끝내고 나와 알았을 때 감사한 마음 그지 없었습니다.

또한 검찰청에서 인천시 의사회와 관할 보건소에 문의했을 때 “백진물리치료실”에 대한 비난은 전혀 없고 인천시에 물리치료를 보급하는데 공이 큰 백진 씨를 상은 못할 망정 처벌이라니 가당찮은 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모 의사회장님이 계셨다는데 또한

여태까지 살아온 저의 보람같은 걸 느꼈습니다.

86年 1月 17日 판결 결과는 보건소에서 예측한 십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벌금 50만원과 집행유예가 떨어졌습니다. 항소를 하면 의료법이 아니고 의료기사법에 의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백오십만원 이상의 변호비와 2개월이라는 신경쓸 일이 귀찮아 회원 여러분께 죄송하게도 제일 낮은 판결을 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을 뿐 저 자신은 보다 더 큰 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체험이었다고 자부하고 싶을 뿐입니다.

“법이 무엇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정도의 일에 좌절할 백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체되어 있는 협회와 저를 채찍질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더욱 더 분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매스컴을 통하고, 물리치료의 혜택을 깊이 받았던 분들의 서명도 받아 내고 협회에선 주무관청과 더욱 더 활발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대의원 의장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결코 그 정도의 으뜸쟁이에는 끄덕도 없었다는 걸 적어도 저에게 그런 경험을 시킨 당사자에게는 알려야 할테니까요.

회원 여러분들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저의 신분이 안전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4월 30일 남구 주안 2동 1423-34에 위치한 삼일의원 지하실로 이사를 했습니다. 50명에 가까운 넓은 공간을 많은 환자로 채워 보겠습니다.

전화번호는 82-0856 옛날 그대로이오니 많은 격려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회보를 통해 말씀드리지 못한 다른 이야기도 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끝으로 저의 근황을 실을 수 있도록 해 주신 홍보 이사님 이하 홍보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986. 5.

## Gait Analysis (보행분석)

서울대학교 물리치료실

임 인 혁

정상 보행주기에는 두 개의 주기가 있다. 즉지면에 발이 닿아있는 시기인 stance phase (입각기)와 지면에서 발이 떨어져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인 swing phase (유각기)이다. 정상 보행주기의 60%는 입각기이며(이때 양 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시기인 동시입각기(double stance)가 25%를 점유한다) 40%는 유각기

이다.

이 두 주기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A. Stance phase (입각기)

#### 1) Initial contact (Heel strike)

발뒷꿈치가 지면에 닿을 때를 말한다. 이때의 중요